



일본 디지털 무역의 현황 및 규범

□ 디지털 무역의 기본 정의와 주요 논점 및 현황

- o OECD는 디지털 무역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의 무역으로, 전자적 방식이나 물리적으로도 배송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이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글로벌하게 통일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후술할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와 개도국과 선진국 간 Digital Divide 문제 (정보 격차, PC나 인터넷 이용 계층 간에 생기는 격차)로 인해 WTO 및 OECD 등을 통한 디지털 분야의 다자무역규범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임.
 - 디지털 무역은 주로 지역무역협정, 복수 국가 내 무역협정으로만 규범이 성립
- o 미국, EU, 호주 등은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 WTO 내에서 논의하는 동시에, FTA/EPA에서 자국에 유리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는 중.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규제 현황

- ㅇ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의 거래'임.
- 디지털 무역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디지털 무역의 확장된 개념으로 데이터 무역(trade in data)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각종 경제동반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기타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글로벌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원칙이 확인되고 있음.
- 하지만 개인정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규제나 국내에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함.
 -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 규제의 목적은 개인정보에 대해 자국에서의 보호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국외에서도 확보하는 것, 국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중요 데이터의 이전을 관리하는 것임.

- 다만 설정한 목적보다 과도한 규제를 가하거나, 자국의 산업 보호를 배경으로 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ㅇ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 대해 국가별 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위시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음.
- EU는 대규모 소비시장으로서 인권,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입장이자 디지털 자유화에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태도를 보임.
- 중국은 사이버보안법(2017년 6월 시행), 데이터보안법(2021년 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11월 시행) 관련 하위 규칙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데이터에 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됨.
- 중국은 특히 WTO 전자상거래회합에서, 인터넷 주권·데이터 보안을 내걸어 도상국의 규제 조치를 배려한 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인정한다고 하는 입장임.
- 일본은 미국에 더 가까운 포지션으로 산업 데이터에 관한 법 규제는 자유도가 높으나, 개인 데이터의 국경 초월 이전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존재함.
- 일본 정부는 각국 규제의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모집에 대한 의견 제출, 양자 간 대화에서의 문제 제기, WTO 관련 위원회, TPR 절차나 양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과잉 규제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음.

〈개인 데이터 · 비(非)개인 데이터의 국경 초월 이전 관련 규제 정리〉

	미국	일본	EU	중국
개인데이터의 국경 초월 0전	미국 원칙 자유 <일반적인 법 규제는 없음>	일본 원칙, 본인 : <개인정보보호법> ●이하의 경우를 제외한 본인 동의가 필요 •국가: 여행 규제에 관한		중국 원칙 제한 <사이버 보안법> ●국외로의 제공이 업무상 필요해도 •본인 동의가 없음
	※ 행정 분이에 예외 있음	지정 ・사업자: 기업 단위의 적합에 근거한 경우	 국가: 충분성 인정 사업자: 표준계약조항 (BCR), 구속적 기업규칙(SCC)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국방상 리스크가 있음.

	※ 헬스케어분야에 예외 있음	※행정, 헬스케어, 금융, 전기통신분야 등에 예외 있음	・기타 정부가 인정할 때는 이전을 할 수 없음. ●개인 데이터, 중요
산업데이터의 국경 초월 0전	규제는 없음>	공공의 안전등을 제외하고 자유 소비(非)개인 데이터의 자유 이전에 관한 틀에 관한 규제안> ※행정, 헬스케어, 금융, 전기통신분야 등에 예외 있음	데이터는 국내 보존의무 ●'중요 데이터'는 27분야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중요 정보 인프라'란, 정부기관, 에너지, 재정, 수송, 수리관리, 보험의료, 교육, 사회보장, 환경보호, 공익사업, 전기통신네트워크,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국방과학기술, 대규모 기기, 화학약품, 식품 및 제약산업, 과학연구, 보도기관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기초·원칙이 되고 있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정부 접근'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일본이 제안하기도했음. (2019.11)

전자 상거래의 상거래 형태를 둘러싼 과제

- ㅇ 디지털 콘텐츠의 분류에 대한 문제
- WTO 협정은 디지털 콘텐츠(전자로 전송되는 문서, 비디오 등)의 분류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WTO 협정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재화 거래'로 볼 때는 GATT, '서비스 거래'로 볼 때는 GATS,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료'로 볼 때는 TRIPS 협정이 각각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나 고려해야 할 이슈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국제 경쟁력이 높은 ICT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무차별 대우(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GATT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문화나 언어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EU는 디지털 컨텐츠의 문화적 보호를 목적으로 GATS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은 GATS 또는 GATT에 대한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CD와 같은 물리 매체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때도 GATT를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각국의 의견차가 커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
- 또한 이 문제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EPA 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프로덕트」를 정의해, 무차별 대우를 보장하는 경향에 있음.
- ㅇ 전자송신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
-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문제, 즉 디지털 콘텐츠를 '재화의 거래'로 간주 하는 경우의 관세부과와 그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WTO는 ①전자상거래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확보할 필요성, ②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신지나 송신 주체 등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정리·포착하는 것의 곤란성, ③가치지표가 미정립된 디지털 콘텐츠에 적정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불가능성 등을 감안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룬 후 현재까지 유지해 옴.
-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미국, EU 등이 체결한 EPA를 비롯한 여러 협정이 전자송신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를 둘러싼 과제

○ 데이터 현지화란 ① 데이터의 국내 보유 및 보존을 요구하는 조치 (예: 컴퓨터 관련 설비의 국내 설치, 기업 비밀 등의 공개 요구) 및 ② 데이터의 월경 이전을 제한 하는 조치 (예: 개인 정보 이동 규제)를 의미함.

- 데이터 현지화는 국내 산업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국가안전보장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한 남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WTO 협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음.
- TPP나 CPTPP의 경우, 컴퓨터 관련 설비의 국내 설치 요구나 소스 코드의 공개 요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하고 있음.

경쟁 환경을 둘러싼 과제(플랫폼 등의 민사책임 면책)

- USJDTA(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는 SNS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쌍방향 서비스 제공자 등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에 대해, 일미간의 국내법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미 양국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각국의 이해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에 있음.

〈일본이 체결한 EPA의 주요 규칙에 대한 현황〉

규정의 내용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USJDTA) (2020년 1월 발효)	일-EU EPA (2019년 2월 발효)	CPTPP (2018년 12월 발효)	TPP (2016년 2월 발효)	일-몽골 EPA (2016년 1월 발효)	일-호주 EPA (2015년 1월 발효)	일-스위 스 EPA (2009년 9월 발효)	[참고] USMCA (2020년 7월 발효)
디지털 프로덕트 의 무차별 우대	0	×	0	0	0	0	0	0
전자적인 송신에 대한 관세 불부과	0	0	0	0	0	0	0	0
전자적 수단에 따른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을 초월한 이전	○ (예외 있음)	※ (발효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	(예외 있음)	(예외 있음)	×	×	×	0
개 인 정 보 등 의 보호	0	0	0	0	×	0	0	0
온라인소비자의 보호	0	0	0	0	0	0	0	0
캠퍼관설이국 내설치 요구금지	○ (금융서비스를 포함)	×	(예외 있음)	(예외 있음)	(예외 있음)	×	×	0

소스 코드 등 개시요구 금지	(알고리즘을 포함)	0	0	0	0	×	×	(알고리즘 을 포함)
특정 암호 등 사용 요구의 금지	0	×	×	×	×	×	×	×
규제 협력	×	0	0	0	0	0	0	\circ
정보공개	0	×	×	×	×	×	×	0
전자 행정(전자 서명 • 전자인증 등)	0	0	0		0	0	0	0
민사책임의 면책	0	×	×	0	×	×	×	0

^{*}표에서 해당 규정이 있는 것은 ○, 명확한 조문이 없는 것은 ×로 표기

□ 일본의 디지털 무역 현황

- 2023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의 개정안을 공표. 2030년에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합계 매출액 15조엔 이상」(2020년 대비 약 3배) 실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
- o 현재 일본의 무역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디지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 의존도의 상승이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자본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PC 등의 디지털 관련을 중심으로 수입 침투도 (국내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가 상승, 디지털 관련 서비스 수입의 확대가 진행중임.
 - 이에 대한 주요 대응책으로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 인바운드 수요 도입 및 해외 콘텐츠 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 확대. 중요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국내 회귀 지원 등이 있음.
- ㅇ 對세계의 디지털 관련 재화 수출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은 약해지고 있음.
- 일본 기업이 중국 등에서 해외 생산을 진행함에 따라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수출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일본계 기업의 생산 감소나 해외 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인해 일본계 기업의 점유율이 서서히 상실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음.

디지털 서비스 무역

- 디지털 관련 수지의 분류는 일본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로 본 서비스 거래의 글로벌화 (2023)」에 준거하여,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전문·경영 컨설팅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사용료의 3개를 상정함.
- ㅇ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의 시장점유율이나 성장률 면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음.
- 국가별 및 지역별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시장점유율은 낮으나 성장률이 높은 중국 (39.8%)과 한국(36.2%)에 비해, 일본의 성장률은 높지 않음(3.6%). (2021년 기준)
-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디지털 관련 수지 적자는 약 5.5조 엔으로 사상 최대를 갱신했음. 이는 사상 최대 흑자를 갱신한 여행 수지 흑자 약 3.6조 엔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OECD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임. (2023년 기준)
- 이에 비해 디지털 무역 강자인 아일랜드의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는 1,9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의 12배, 영국의 8배에 해당함.
-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낮고 유럽에서는 드물게 공용어가 영어이며, 교육 수준이 높아 세계적인 대기업이 글로벌 본사나 유럽 본부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특징이 서비스 수지에 응축되어 있음.
- 디지털 관련 수지의 경우, 미국은 1,114억 달러, 영국은 692억 달러 흑자, 유럽공동체 (EU, 아일랜드 제외)도 332억 달러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 영국, EU의 3강체제가 형성됨.
- o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도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2.6%)은 매우 낮은 상황임. (2020년 기준)

EC(E-commerce)시장 및 데이터 유통

- o EC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은둔형 수요가 높아진 2020년에 급격히 확대됨. 2021년은 반동 감소로 성장률이 크게 축소된 후, 2022년부터 다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
- 국가·지역별로 보면, 일본의 시장 규모는 1,816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 3.3%로 4위수준임. 1위는 중국으로 시장 규모 2조 7,997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고, 2위인 미국은 427억 달러로 세계시장점유율의 20% 정도를 차지함.

- 특히 일본에서 EC의 이용실적, 확대 의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은 결과를 보임. (JETRO(2022), 「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 데이터 유통 면에서는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은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음. 유럽에 뒤를 이어 아시아도 역내 유통량이 많고, 그 비율은 아시아 전체 데이터 · 플로우의 68.7%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322.3Tbps)의 데이터 유통이 가장 많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에서는 10위권임. (2022년 기준)

□ 일본 디지털 무역의 주요 규범 및 협정

○ 일본이 체결한 메가 FTA인 CPTPP, 일·EU EPA, RCEP 협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은 각각 체결 상대국의 국내 사정이나 중점 분야를 반영해, 자유화에 관련된 규정의 범위나 실효성에 관련된 예외 규정,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 등이 다름.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o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및 싱가포르 및 베트남의 11개국에 의해 2018년 3월에 서명됨.
- o CPTPP는 아시아 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협정으로, 다양한 디지털 규제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현지화법의 제한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구비하고 있음.
- 일본 등 CPTPP 참여국은 디지털 무역 거래에서 "TPP 3원칙"(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요구 제한,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의 제한)을 강조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각 체결국은 대상자의 사업 시행을 위해 정보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을 넘는 이전을 허가하는 것으로 함.
- 데이터의 자유 유통이 원칙이지만,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에 의한 제한은 인정하고 있음.
- 소스 코드 공개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대량판매용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에 한정되며, 중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용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한정적임.

EU

- 일본은 EU와의 데이터 연합 구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2018년 EU GDPR(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 내의 모든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에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작됨.
- o 2019년 1월 23일에는 유럽위원회(EC)가 일본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충분하다는 인증을 발행함. 이는 EU에서 GDPR 적용 이후 처음으로 EU와 제3국 간에 데이터 보호 수준이 상호 동등하다고 인정한 경우임.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일본은 RCEP 참가를 통해 세계 5대 메가 FTA(한・중・일 FTA, RCEP, CPTPP, TTIP, 일・EU FTA) 중 4개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메가 FTA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됨.
- RCEP 협정에서는 TPP 3원칙 중 데이터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 두 조항 모두 예외 규정으로서 체결국이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나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이익 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제가 명기되어 있음.
- RCEP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한 중요한 메가 FTA이지만, 디지털 무역 부분에서는 자유화 수준이 낮아 전자상거래 형태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속력이 없다'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비교적 영향력은 제한적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국제 무역 상대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흐름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 CBPR)을 제시함. 이러한 CBPR 시스템에서는 제3자인 인증단체에 의해 기업이 CBPR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할 필요가 있음.
- APEC 가입국 중 9개국, 즉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 대만, 필리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CBPR 시스템에 참여함.
- 애플·IBM·HP 등 약 60개 글로벌 기업들이 APEC의 CBPR 인증을 취득

- CBPR 시스템하에서 APEC은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협정(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 CPEA)을 책정함.
- CPEA 협정은 APEC이 가입국 간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 조사 등의 법 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됨.
- CPEA 관리자로서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USJDTA (미일디지털무역협정)

- o USJDTA는 디지털 무역의 표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최고 수준의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있음.
- USJDTA는 디지털 공간에서 현지화를 요구하는 등의 무역 장벽 설치를 금지하며, 그 주요 조항에는 비차별 원칙,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 USJDTA는 한 · 미 FTA에는 없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 규정을 가지고 있음. 나아가, CPTPP 또는 USMCA(미국 · 멕시코 · 캐나다 협정)의 전자상거래 장 (chapter)에는 없었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현지 컴퓨터 설비 설치 금지(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규정과 '암호를 사용한 전기통신기술상품' 규정이 USJDTA에서 새롭게 등장함.
- USMCA 및 CPTPP와 비교하면, USJDTA는 CPTPP 제14.9조 및 USMCA 제19.9조에 규정된 '종이 없는 무역' 조항, '인터넷 이용 및 접근원칙', '협력' 규정, 그리고 CPTPP 제14.12조에 포함된 '인터넷 접속료'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는 디지털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 굳이 별도의 조약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음.
- USJDTA는 '분쟁해결조항'이 없음. USJDTA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협의 등의 제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분쟁해결절차도 존재하지 않음. 강행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원칙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정보의 국경 간 이동 등 협정상 의무를 어길 경우의 불복 방안도 없음.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 미국 조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한국에서는 최우선 디지털 무역협정 과제로 여겨짐.

- 디지털 통상 이슈는 IPEF의 주요 주제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고 있음. 이 지역은 인터넷, 스마트폰, SNS, 핀테크 보급률, 인터넷 다운로드속도 등 디지털 환경이 세계 평균보다 우수한 곳이며,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같은 거대 경제권의 규범이 자주 충돌하는 지역임.
- IPEF의 「무역」필러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 ①신뢰와 안전에 근거하는 국경 초월의 데이터 흐름, ②디지털 경제의 포섭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③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이용을 교섭 목표로 함.
- 일본은 자유화 수준이나 규율의 공통화를 목표로 하여 주요국 간의 조정 기능과 논의의 리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o 일본 사회는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에서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
- ㅇ 그러나,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및 국제적인 룰 세팅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음.
-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을 필두로 EU, CPTPP를 비롯한 양국가 간의 EPA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두고 있음.
- 특히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CPTPP에서는 소위 TPP 3원칙(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요구 제한, 소스 코드의 공개·이전 요구의 제한) 이 반영되어 디지털 무역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한면, 최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 개념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정반대의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이 최근 사생활 침해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바이트댄스 라는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규제하려는 것이나, 일본의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고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도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라인야후의 경우,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2023년 11월에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2024년 5월 16일 이후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외부 기업에 서비스를 위탁할 때 사전에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허가나 인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 향후 일본에서 이러한 데이터 주권 개념이 더욱 강화될 경우,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예정의 한국 IT 또는 AI 관련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경제 안전보장담당 대신에게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 디지털 무역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거나 사업 자체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음.

〈참고문헌〉

- 上谷田 卓、 デジタル貿易・デジタル課税をめぐる国際社会の取組(2020)
- JETRO,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 2023年版
- 内閣府, 世界経済の潮流 2023年
- 経済産業省,通商白書2023